

보도자료



관계부처 합동 2021년 7월 20일(화) 석간 (7. 20. 10:00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

과 장 장헌범 (044-205-3401) 사무관 노정란 (044-205-3416)

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과 장 문일곤 (044-201-8312) 사무관 임성은 (044-201-8501)

규정 없어 처리 못한 민원, '적극행정 국민신청제'로 해결한다

- 국민신문고로 신청하면 적극행정위원회, 사전자문(컨설팅)으로 해결 방안 모색 -
-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, 7.27.부터 시행 -
- □ 앞으로는 관련 규정이 없거나,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했던 국민제안이나 민원이 '적극행정 국민신청제'를 통해 해결되고, 각 지자체와 관계 부처가 함께 하는 '적극행정위원회의 합동회의'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.
- □ 행정안전부(장관 전해철)와 인사혁신처(처장 김우호)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「적극행정 운영규정(대통령령, '19.8.6 제정)」일부개정령안이 7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.
- □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이 직접 '국민신문고' 누리집 (m.epeople.go.kr)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.
 - 또한,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들이 관련된 사안인 경우 협업을 통한 적극적 문제해결을 위해 '적극행정위원회'를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.
- □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▲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, ▲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공정성 제고, ▲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지원 강화 등이다.

<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>

- □ 첫째, 국민이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 제도 (적극행정위원회, 사전컨설팅)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'적극행정 국민신청제'의 운영 근거가 마련된다.
 - 국민이 민원이나 제안을 신청하였으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경우, '적극행정 국민신청'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.
 - 국민신청을 배정받은 **담당 공무원은**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**적극행정위원회, 사전컨설팅을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**해야 한다.
- □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시행되면 **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의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**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.
 -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**구체적인 신청 방법, 처리 절차, 기준 등**은 빠른 시일 내에 **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할 예정이**다.

<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개최>

- □ 둘째, 다수 지방자치단체, 정부부처간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'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'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진다.
 -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부처별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단독 개최해 다수 지방자치단체나 부처가 관련된 현안에 대한 적극적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었다.
 - 앞으로 **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**를 통해 **다양한 복합문제**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.

- □ 셋째, **적극행정위원회 심의·운영의 내실화**를 위한 조치도 포함되었다.
 - 적극행정위원회 공정성 제고를 위해 **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최·** 기**피·회피 기준**이 지침에서 **법령으로 상향** 규정됐다.
 - 법령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'감사기구의 장'을 적극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하도록 하였다.

<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지원 강화>

- □ 마지막으로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'소극 행정 신고센터'의 운영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.
- □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"적극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이 되어야 한다"면서 "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을 계기로 주민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."고 말했다.

붙임

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주요 개정내용

구 분	주 요 내 용	조 문
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	■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근거 마련 - (신설) 국민이 적극행정 제도 활용을 요청할 수 있는 '국민신청제' 운영 근거 마련	
	 (신청대상) ① 민원 또는 국민제안을 기 제출했지만 ②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 (신청방법) 국민권익위원회 '국민신문고' 누리집을 통해 신청 ※ '국민신문고' 홈페이지에 신청 창구 개설 예정 (처리절차) 국민신청 → 권익위 1차 검토 → 소관 지자체에 배정 (필요시 소관지자체에 대한 권익위 의견제시) → 적극행정위원회 또는 사전컨설팅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→ 처리결과 통지 	제17조의2 (신설)
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공정성 제고	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 마련	ᅰ44 天 Olo
	- (신설)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·회피 규정 마련	제11조의2 (신설)
	■ 감사기구의 장을 적극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	
	- (현행)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	제11조 (개정)
	- (개정)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규정	
	■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운영 근거 명확화	
	- (신설) 다른 기관들과 적극행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	/=II T-1\
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지원 강화	■ '소극행정 신고' 운영 근거 신설	제17조의3
	- (신설)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	(신설)
	■ 소극행정 예방 지원 관련 권익위 지원의무 명시 - (현행)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·홍보 사업 추진 관련, 행안부·교육부 장관 및 지자체장 권한만 명시 - (개정) 지방자치단체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자문·상담 및 교육 등을 신청하는 경우 권익위원장의 지원 의무 명시	/7II T-1\